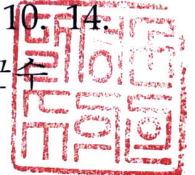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48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19. 10. 14.

제출자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및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5조(사용허가)제3항 시장사용허가기간을 “2년 이내” 에서 “5년 이내” 로 수정
- 나. 제6조(사용허가의 취소·해지와 사용제한)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제2항으로 신규 작성
- 다. 제7조(청문 등)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수정
- 라. 제15조(사용자의 신고의무) 중 4.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조항 삭제
- 마. 제17조(사용 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) 제6조제1항을 제6조제2항으로 수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(1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의2
 - (2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 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4) 규제심사 : 원안 동의

(5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9. 8. 29. ~ 9. 18.(20일간, 공고일 미산입)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6) 비용추계서 : 생략(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)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2년” 을 각각 “5년” 으로 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1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군수는 사용을 허가한 시장재산을 국가나 달성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7조 중 “제6조” 를 “제6조제1항” 으로 한다.

제15조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7조 중 “제6조제1호” 를 “제6조제2항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사용허가) ①~② (생략) ③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<u>2년</u>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<u>2년</u>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.	제5조(사용허가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5년</u> ----- ----- <u>5년</u> ----- -----
제6조(사용허가의 취소·해지와 사용제한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 용을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. 1. 사용을 허가한 시장재산을 국가나 달성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필요하게 된 경우 2. ~ 6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6조(사용허가의 취소·해지와 사용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2. ~ 6. (현행과 같음) <u>② 군수는 사용을 허가한 시장재산을 국가나 달성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u>
제7조(청문 등)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용허 가를 취소·해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	제7조(청문 등) ----- <u>제6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
제15조(사용자의 신고의무) 사용자는----- 신고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	제15조(사용자의 신고의무) 사용자는----- 신고하여야 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제17조(사용 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) 군수는 <u>제6조제1호</u> 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8 조에 따라 보상한다.	제17조(사용 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) --- <u>제 6 조 제 2 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의2

제17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·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·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11.]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